

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1년 3월 16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
법무부장관

박범계

●법률 제17929호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”를 “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0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제1항”을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제5항”을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결정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(법률 제16924호, 2020. 2. 4. 공포, 2021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이 법에서 「형사소송법」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1년 3월 16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
법무부장관

박범계

●법률 제17930호

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전단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제1항”을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1항”으로 한다.